

의안번호	2206009
의 퇴 인	장동혁의원
회 답 일	2024.12.3.
추 계 번호	24D545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¹⁾에 따라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인 사람 등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73억 6,400만원, 2029년 93억 9,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18억 8,600만원(연평균 83억 5,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실시 (안 제4조제3항 신설)	7,364	7,827	8,320	8,841	9,397	41,750	8,350

- 주: 1.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실시(안 제4조제3항 신설)은 의무규정이고, 이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인 사람,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확인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3. 개정안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대상자 수는 법무부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고 1인당 진단비용은 2024년 기준 100만원(법무부 자료)이고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적용

1)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6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제3항 신설	검사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인 사람,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종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진단이나 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함.
2	안 제22조의2(거주지 지정 명령의 청구 신청 전 치료명령의 청구) 신설 및 제24조(비용부담)제1항	보호관찰소의 장은 성폭력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신청하기 전에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형자는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제3항 신설	○	-
2	안 제22조의2(거주지 지정 명령의 청구 신청 전 치료명령의 청구) 신설 및 제24조(비용부담)제1항	×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신청 예정인 성폭력 수형자 중에서 치료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수형자의 비율, 1인당 치료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하여 추계함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인 사람,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확인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다만, 개정안의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피고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전문의의 진단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되는 대상자 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진단 비용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수와 성폭력 3회 이상인 범죄자 수를 합하여 정신건강 진단 대상자수를 추정하고 1인당 진단 비용을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정신건강 진단 대상자 수) 개정안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 대상자 수는 2025년 7,213명, 2029년 8,503명으로 추정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5%	2.1%	2.0%	2.0%	2.0%	2.0%

- 성폭력범죄 건수는 2022년 기준 41,433건이고 추계기간 동안 성폭력범죄 건수는 매년 4.2% 증가한다고 가정³⁾
- 범죄 건수 당 1명의 범죄자가 있고 모두 19세 이상인 것으로 가정하며 성폭력범죄 건수 중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 비율은 3.9%⁴⁾, 성폭력 3회 이상인 범죄자 비율은 14.9%(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료⁵⁾), 중복 사례는 성폭력 3회 이상 범죄자 중 22.9%⁶⁾로 가정하여 정신건강 진단 대상자 수 추정

[표 2] 정신건강 진단 대상자 추정: 2025~2029년

(단위: 건, 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성폭력범죄 건수(a)	47,956	49,970	52,068	54,255	56,534
13세 미만 대상으로 한 범죄자 수 ($b=a \times 3.9\%$)	1,828	1,905	1,985	2,068	2,155
성폭력 3회 이상 범죄자 수 ($c=a \times 14.9\%$)	6,985	7,278	7,584	7,902	8,234
중복($d=c \times 22.9\%$)	1,600	1,667	1,737	1,810	1,886
대상자 수($=b+c-d$)	7,213	7,516	7,832	8,160	8,5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인당 진단 비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1인당 진단 비용은 2025년 102만원, 2029년 111만원으로 추정
 -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건강 진단비용은 1인당 100만원(2024년 기준)
 - 본 추계에서는 1인당 진단 비용이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표 3] 1인당 진단 비용 추정: 2025~2029년

(단위: 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1인당 진단 비용	102	104	106	108	1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대검찰청의 「2022년 범죄분석」, 「2023년 범죄분석」에서 성폭력범죄 건수 활용
 4) 대검찰청의 「2021년 범죄분석」, 「2022년 범죄분석」, 「2023년 범죄분석」에서 2020~2022년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비율의 평균
 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I): 성폭력범죄」에서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와 각 유형별 3회 이상 재범 비율을 활용하여 추정
 6)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징역형 10년 이상 성폭력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3회 이상 재범자 수는 306명이고 이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는 70명으로 그 비율이 22.9%임

- 추계결과,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인 사람 등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73억 6,400만원, 2029년 93억 9,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17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정신건강 진단 대상자 수(a, 명)	7,213	7,516	7,832	8,160	8,503	—
1인당 진단 비용(b, 만원)	102	104	106	108	111	—
추가재정소요(=a×b, 백만원)	7,364	7,827	8,320	8,841	9,397	41,7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